

1. 개정이유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전방문 전 공사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보고서 서식 신설(안 제18조제4항 개정,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1) 현행 규정상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 또는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감리보고서에 대한 서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여, 감리보고서 서식을 신설

나.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 통보 의무화(안 제20조의2제2항 개정)

1) 현행 규정상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1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원활한 입주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토록 명확히 규정

다.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1)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사전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실시 전 시공을 완료(전유부분 및 주거공용부분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공 완료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

라. 공사 지연 시 사전방문기간 조정(안 제2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1) 자재 공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조정하려는 경우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 확인 및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신청서에 급수설비, 전기차 주차장 기입란 신설(안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23호서식)

1)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조치 의무화,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 설치 의무화 등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 정보 기입란을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사용검사신청서에 신설하여 해당 정보가 건축물대장에 표기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2항”을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을 “방문기간”으로, “입주예정자에게”를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의2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실시일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전유부분 및 주거공용부분에 한정한다)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3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⑥ 사업주체가 제5항에 따라 사전방문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방문계획과 함께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확인 및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1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방문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20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업계획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승인번호(년도 - 시·군·구 구분 - 구분 - 일련번호) □□□□ - □□□□□□□□ - □□□□□□						
사 업 구 분	주택건설사업([]전체 []공구별 건설·공급) []대지조성사업 [] 승 인 [] 변 경 승 인					
① 사업주체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② 설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 무 소 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③ 시 공 자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대 지 조 건	④ 대 지 위 치					
	지 번	지 목	대지면적	최 소 대지폭	최 대 대지폭	등 기 명의자
			m ²	m	m	
			m ²	m	m	
			m ²	m	m	
	용 도 지 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 지 현 황					
	주 변 현 황					
사 업 계 획 개 요			※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건폐율(%)			연 면 적 (m ²)			
용적률산정용 연면적(m ²)			용 적 률 (%)			
⑤건축물명칭	주 건 축 물 수	동	부속건축물	동	m ²	
⑥ 주 용 도	⑦ 주택 형태		총 세 대 수	세대 호 가 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 용 검 사 예 정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킹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m³)
	지하	개	(m³)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²	대 m²	대 m²	대
	기계식	대 m²	대 m²	대 m²	
	전기차	대 m²	대 m²	대 m²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분양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 항			
※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항
 []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이
아
도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I.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공구명	
주 용 도			

주택유형별 세 대 수	공 공 부 문									민 간 부 문	
	[]	[] 공 공 임 대						[]	[]	[]	[]
	국민임대	소계	5년	10년	30/50년	영구	그 밖의 유형	공공분양	근로복지	민간임대	민간분양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			
----	-----------------------------------	--	--	--

주 구 조											
지 붕											
건축면적(㎡)											
연 면 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 이(m)											
승 강 기	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 자 높 이											
계단유효폭											
복 도 너 비											
외 벽 두께											
인접세대와의 벽 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II. 총별 개요

III. 형별 개요

[illegible]

IV. 사업비/자금계획

구 분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 지 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 계			
	일 반 분 양 비			
	사 업 비 계		자 금 계 획 계	

구 분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 지 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 계			
	일 반 분 양 비			
	사 업 비 계		자 금 계 획 계	

구 분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 지 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 계			
	일 반 분 양 비			
	사 업 비 계		자 금 계 획 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V. 공구별 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⑩ 공 구 명					
공구별 사업개요			※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 택 형 태		세 대 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 용 검 사 예 정 일	

공구별 부대시설 · 복리시설 · 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 설 종 류	설 치 현 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 설 종 류	면 적(㎡)	개 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운동장·주민운동시설·경로당·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문고·유치원·근린생활시설·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5호 「주택법」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④ 여러 필자인 경우에는 각 필자별로 적습니다.
-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⑧·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 외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 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 ⑫ ~ ⑮

예) 지하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 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아파트, -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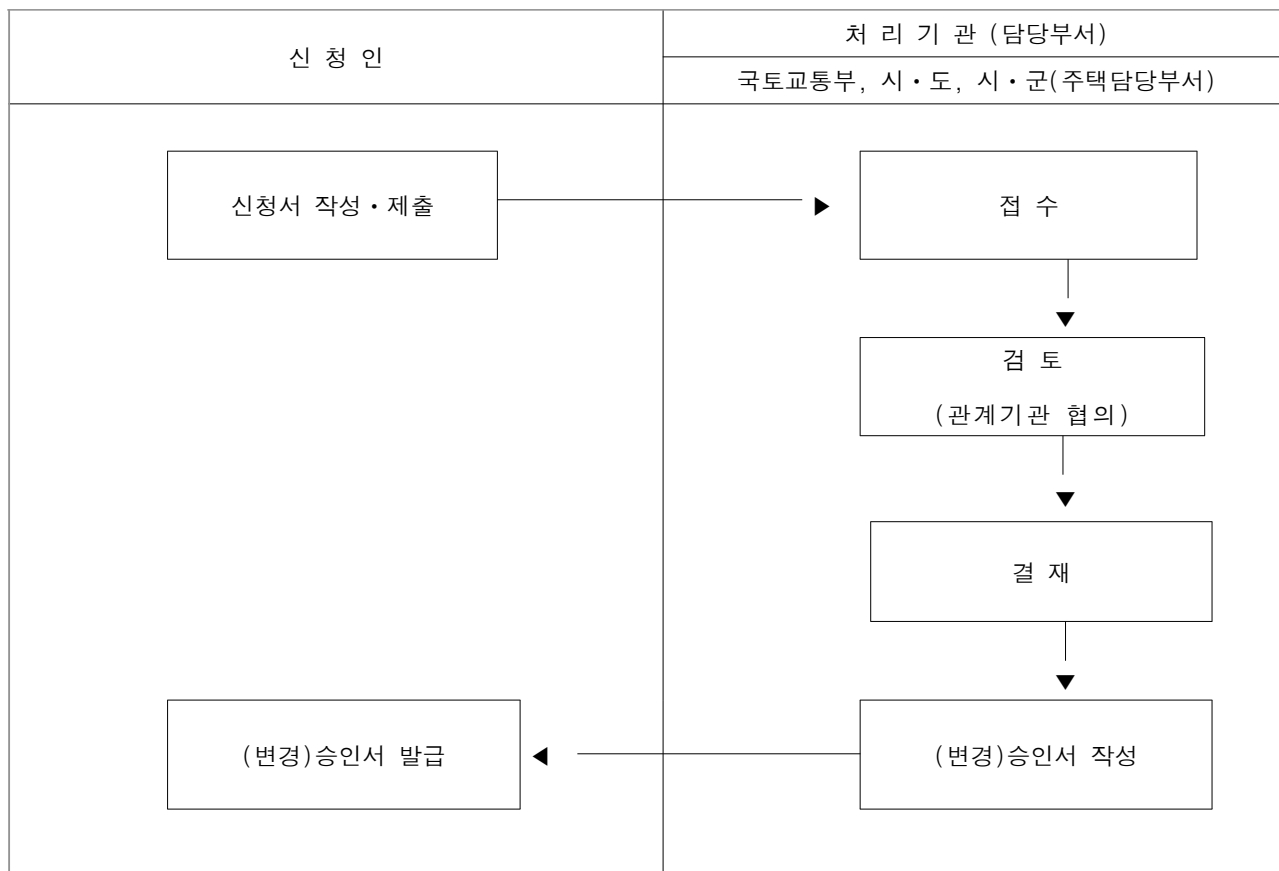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⑯ 각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공구명을 명확히 적습니다(예: 1공구⁴³, A공구 등).

처 리 절 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분기별 · 최종) 감리보고서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건설공사 개요	사업명	
	위 치	
	사업주체	
	시공자	
	설계자	
	공사기간	
	구조 및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율)	
	평형별 세대수	
	부대복리시설	
	조경면적	
	주차대수	
감리용역 개요	감리회사	
	대표이사	
	용역기간	
	감리원 조직	총괄, 건축 0명, 토목 0명, 설비 0명, 기술지원 0명
공사여건	부지현황	
	진입도로	
	배치계획	
	구조계획	
	주차 및 조경계획	
	상,하수도, 도시가스 계획	
	기타(민원, 법적 문제 등)	

210mm×297mm[백상지(80g/㎡)]

2. 기술검토

검토 업무	분야	일자	문서번호	검토내용	검토의견 (조치사항)
설계도서					
사업승인조건					
설계변경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공법					
기술적 문제 및 기타					

3. 공정관리 * 최종보고 시 공정현황, 인력투입현황, 장비투입현황 등 각 분기별 현황 및 합계 작성 필요

	분야	보합 (%)	전분기 누계(%)			금분기(%)			합 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공정현황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합계										

	구분	투입인원			비 고
		전분기 누계	금분기	합 계	
인력투입현황					

	장비명	투입장비			비 고
		전분기 누계	금분기	합 계	
장비투입현황					

금분기 공사추진현황	분야	공사내용	비고
	공통		
	건축		
	토목		
	기계		
	조경		

4. 시공관리

공종별 시공확인 내용	분야	검측 결과(건수)			비고
		적합	부적합	재검측	
	건축				
	토목				
	기계				
	합계				

검측관리 현황	검측일	검측부위	검측내용	검측결과	비고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지시일자	지시사항	조치일자	조치내용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사항 및 방지대책	내용 및 원인	조치사항	방지대책

5. 자재품질관리

자재의 적합성 검토	분야	일자 (접수일/ 승인일)	자재명	제조회사	KS여부	현장 · 의 뢰시험	결과

품질시험 실시결과	공종	시험종목	시험 · 검사 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주요자재 검수	자재명	규격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입자	접수자	
							시공사	감리자

중점 품질 관리 대상	분야	해당공사	예상 문제점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품질확인 지침

콘크리트 타설 관리 대장	구조물명	진행층수	최종 타설일자	전회 타설량(m³)	금회 타설량(m³)	누계 타설량(m³)	비고

6. 안전관리

안전보건 체계	구분	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비고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적 (금회/누계)	구분	실시횟수	주요내용	교육인원		비고
				관리자	근로자	
	정기교육	/		/	/	
	특별교육	/		/	/	

재해발생현황	월	재해자수	사망	부상(입원기간)				비고
				4~7일	8~29일	1~3월 미만	3월이상	
	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항목	계약액	사용금액			비고
			전화누계	금회	합계	
	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차수	점검일	공종	점검내용	점검기관

7. 환경관리

폐기물 처리현황	폐기물명	전회 누계	금회	합계	거래업체명	비고
	건설오니					

8. 감리업무 수행실적

감리업무 수행실적	구분	작업상황	감리업무	비고

감리계획 대비 실적	구분	금분기 감리실적	차분기 감리계획	비고

회의 및 교육 실시현황	구분	일시	주요내용	참석자
	월간공정 회의/ 품질관련 회의			

9. 종합분석 및 감리업무 추진계획

종합분석 · 평가 및 검토의견	구분	의견
	기술검토	
	공정관리	
	시공관리	
	자재 품질관리	
	안전 · 환경관리	
	종합평가	

감리업무 추진계획 및 잔여공사 전망 (분기별 보고서 작성시)	구분	전망 및 추진계획
	건축	
	토목(조경)	
	기계	
	기타	

첨부서류

1. 증빙자료

「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기별 또는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감리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사 용 검 사 []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전체 []일부		임시 사용승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택건설사업 임시 사용승인 []대지조성사업 임시 사용승인		[]전체 []일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신청인 (건축주)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민간건설업체		[]주택조합
	[]개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타
설계자	성 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시공사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감리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목	
	지 번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 택 형 태		총 세 대 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제2쪽)

	시 설 종 류	설 치 현 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부대시설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기타		
		계		
	[]근린생활시설			

난방방식		[] 중앙집중공급방식 [] 개별기름보일러 [] 개별가스보일러			
		[] 지역난방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 기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개			
오수정 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m³)	
		지하	개	(m³)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²	대 m²	대 m²	대
	기계식	대 m²	대 m²	대 m²	
	전기차	대 m²	대 m²	대 m²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I.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동 명칭 및 번호										
건 축 주										
설 계 자										
감 리 자										
시 공 자										
주 용 도										
주택유형별 세 대 수	공 공 부 문								민 간 부 문	
	[]	[]공공임대				[]	[]	[]	[]	[]
	국민임대	소계	5년	10년	기타	공공분양	사원임대	근로복지	민간임대	민간분양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 구 조										
지 붕										
건축면적(㎡)										
연 면 적 (㎡)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 이(m)										
승 강 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 고										
반 자 높 이										
평 면 형 식	[]계 단 실 형 []복 도 형									
계 단 유 효 폭										
복 도 너 비										
외 벽 두 께										
인접세대와의 벽 두 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illegible]

III. 형별 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	공용	면적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면적 (㎡)	면적 (㎡)	합계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 건 축 물 의 동 명 칭 및 번 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
		/
		/
		/
		/
		/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 건 축 물 의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 분	구 분 기 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	
				/	
				/	
				/	
				/	

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 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 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 적(㎡)

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 구 명					
공구별 사업개요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당 동 명칭		주 건 축 물 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 택 형 태		세 대 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예정)일	※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공구별 부대시설 · 복리시설 · 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 설 종 류	설 치 현 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공동	[]주민운동시설		
	시설	[]작은도서관		
		[]기타		
		계		
	[]근린생활시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근거법규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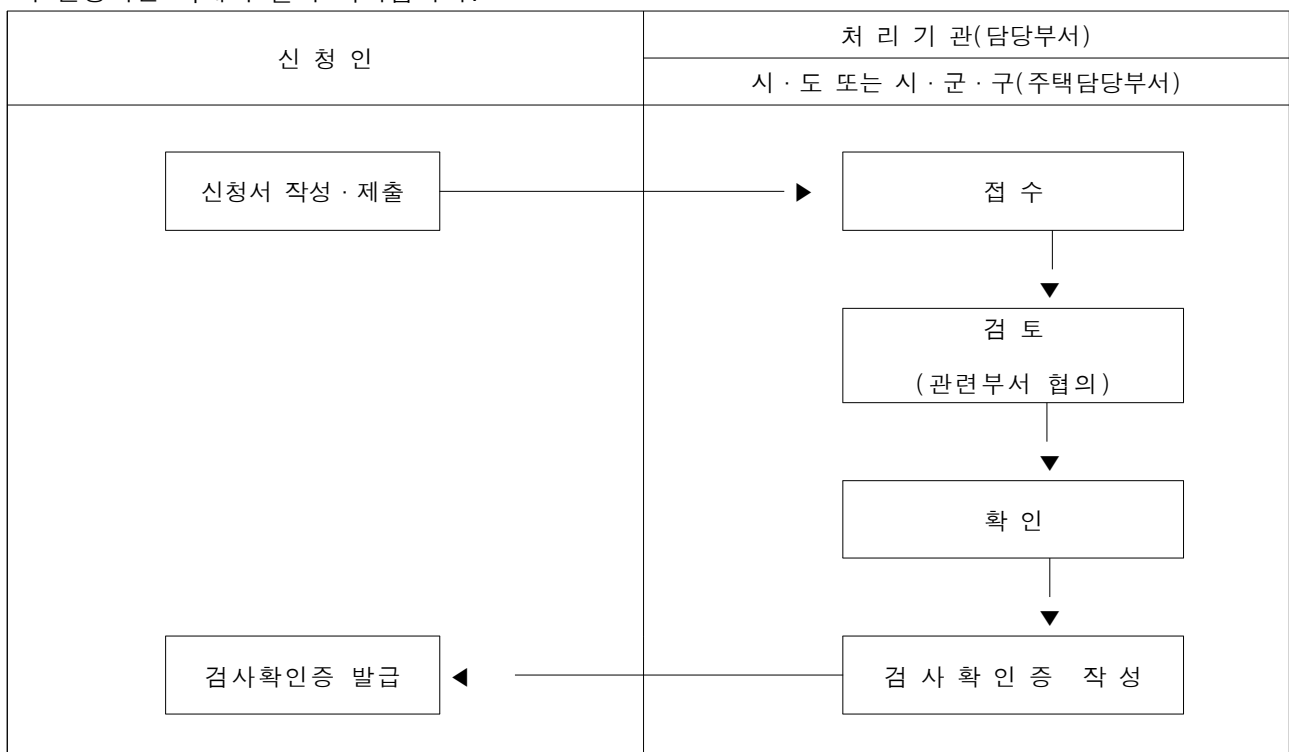
「주택법」 제102조제12호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위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제2쪽 "난방방식": "중앙집중공급방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개별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개별가스보일러"는 세대별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집중된 대규모 열 생산시설(열병합발전시설 등)에서 주택으로 열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을 말합니다.
8. 제2쪽 "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소를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는 별도의 가스공급시설에서 도시가스를 해당단지로 공급하는 경우, "기타"는 위의 방식 이외의 가스시설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③ (생략)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리자는 <u>법 제44조제2항</u>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 <u>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4조제2항</u>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①·② (생략)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u>제18조 제3항</u> 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	③ ----- ----- ----- ----- ----- ----- <u>제18조 제4항</u> -----

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생략)

②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신 설>

<신 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
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방문기간 -----

----,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
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
 ----- 포함한다. 이하 같
 다-----

----- . 이 경우 제5항에 따
라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이 조정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실시일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전유부분 및 주거공용부분에 한정한다)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3

<신 설>

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⑥ 사업주체가 제5항에 따라 사전방문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방문계획과 함께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확인 및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